

특집 · 도서관과 저작권

자료 <1> 한국도서관협회의 저작권법 개정 의견서

아래의 자료는 '98년 2월 문화관광부의 저작권법의 개정 의견 문의에 따라 우리협회에서 제출한 의견서로 내용은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 저작권법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과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도서관계의 기본입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편집자 주

저작권법 개정 의견서

<저작권법>

현행법 규정	개정(안)	개정 이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3. 14. 복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3. 14. 복제 : ①(현행과 같음) ② <u>전자장치의 도움으로 저작물을 기억장치에 입력하거나, 그러한 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있는 저작물을 출력하는 것을 말한다.</u>	전자장치를 이용한 복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복제권에 포함시키기 위해 2항을 새로 신설함
제10조 2.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10조 <u>2. 저작권은 소정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된 때부터 발생한다.</u>	국민들이 저작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즉, 기존의 무방식주의 보다는 저작권의 등록제도를 통해 저작권의 사용허락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저작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이 될 것임
제28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28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단, 이용자의 요구를 접수하는 장소에 명시적으로 이용자의 의무를 게시한 경우에 한 한다.	도서관 등에서 복제할 경우 도서관에서는 반드시 저작권 관련 사항을 이용자에게 주지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저작권의 침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
제30조(점자에 의한 복제) 1. 공표된 저작물은 앞을 못보는 사람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할 수 있다. 2. 앞을 못보는 사람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서는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녹음할 수 있다.	제30조(점자 및 녹음에 의한 복제) 1. 공표된 저작물은 <u>시각장애인</u> 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할 수 있다. 2. <u>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서는</u>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녹음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에 있어 점자 뿐 아니라 녹음에 의한 복제도 허용하며, 1항 및 2항의 '앞을 못보는 사람'을 '시각장애인'으로 그 표현을 바꿈

〈저작권법시행령〉

현행시행령규정	개정(안)	개정이유
제3조 1.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특수도서관을 제외한다)	제3조 1.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규정에 의한 <u>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도서관을 제외한다)</u>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도서관을 포함하도록 함(대학,전문도서관까지 포함시킴)
제4조(앞을 못보는 사람들의 이용을 위한 녹음이 가능한 시설) 법 제30조 제2항(법 제60조 제2항 및 법 제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가. 나. 점자도서관 다. 2. 3. 4.	제4조(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위한 녹음이 가능한 시설) 법 제30조 제2항(법 제60조 제2항 및 법 제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가. 나. (삭제) 다. 2. (신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규정에 의한 도서관 3. (현행 2항) 4. (현행 3항) 5. (현행 4항)	1. ‘앞을 못보는 사람들’을 ‘시각장애인’으로 수정 2. 1항의 ‘나. 점자도서관’은 이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규정에 의한 특수도서관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대신 새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규정에 의한 도서관’이라는 항목을 신설, 삽입함. 이는 특수도서관 뿐 아니라 공공, 대학, 전문도서관 등 모든 도서관을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점자 또는 녹음자료를 모든 도서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저작권법시행규칙〉

현행시행규칙규정	개정(안)	개정이유
제4조(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서는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7	제4조 1. 1~7. 8. <u>도서관자료제출필증</u>	위 저작권법 개정의견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주의로 하게 될 경우, 저작권등록신청시에 도서관자료제출필증을 첨부서류에 포함시켜야 함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도서관계의 기본입장〉

1. 모든 도서관은 21세기 정보화사회의 근간인 국가정보기반 마련의 중심기관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항상 모든 국민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그러면서도 창조적인 정보이용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이러한 도서관들은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여전히 이러한 발전의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2.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은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정보 소유자)와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도서관은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은 물론, 공정사용에 의한 저작물의 합법적인 활용을 동시에 도모해야 하는 입장에서 도서관 면책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3. (저작권 등록의 법제화) 현행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는 아직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고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작권 제도가 정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저작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저작권 등록을 법제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통합적으로 저작물 관련 정보를 관리할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방식주의를 탈피하여 일정 기간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4. (도서관 등의 2차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작성권) 끝으로 저작권의 기본목적이 저작권자의 노고에 대해 보상 뿐 아니라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려는데 있다는 점과 도서관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과 빈약한 우리 나라 도서관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익적인 성격의 도서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면책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다. 즉,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서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2차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작성권에 대하여 도서관 면책범위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제화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면책범위의 확대가 저작자의 권리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저작자에 대한 보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1998년 2월 20일

한국도서관협회

특집 · 도서관과 저작권**자료 <2> 미국도서관협회의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한 성명서**

아래의 자료는 '전자시대의 공익에 기여하는 공정 이용(Fair Use in the Electronic Age:Serving the Public Interest)'과 관련하여 미국도서관협회가 1995년 1월 18일 발표한 성명서의 요약문으로 자료 출처는 LG상남도서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lg.or.kr>) 전자도서관 일반자료실임. 원문은 인터넷 <http://libweb.sonomae.edu/Resources/copyright/ALA-fairuse.html>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 편집자 주

<前文>

다음 성명서 "전자 시대 공익에 기여하는 공정 이용(Fair Use in the Electronic Age : Serving the Public Interest)"은 지적재산에 대하여 미국내 몇몇 도서관 협회들이 논의한 결과 만들어진 것이며,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도 저작권 소유자와 이용자의 이익 및 권리 사이에 균형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데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이다.

이 문서는 전자 환경에서 개인, 도서관 그리고 교육 기관에 의한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에 대한 윤곽을 그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 저작권 논의를 통해 알려지고, 이용자와 사서들에게는 참고 문서로써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미완의 문서(Working Document)가 널리 희랍되고, 여기에 담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려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그러므로 이 성명서는 늘 진행중인 작업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미국도서관협회)는 이 성명에 대한 의견 개진을 언제나 환영한다.

<本文>

"저작권의 기본적인 목적은 저자의 노고에 대해 보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독창적 표현에 대한 권리를 보증하는 한편 다른 사람들에게는 작품이 전달하는 아이디어와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그 결과는 불공정하지도 불행하지도 않다. 저작권은 과학과 예술의 발전을 향상시키는 바로 그 수단인 것이다." (美 판사 Sandra Day O'Connor)

미국 저작권법의 진수는 헌법의 기본 정신과 일치되게 저자, 출판사 및 저작권 소유자의 지적 재산 이익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교환을 원하는 사회의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1976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에 명시된 대로 저작자, 출판자 및 저작권 소유자가 그들의 창조적 작업과 경제적 투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반면 공정 이용과 그 밖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공중의 권리도 함께 보호하는 것은 지식의 전파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빼놓을 수 없는 입법 원리이다.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 조항에는 비평, 논평, 뉴스 보도, 수업(학급용으로 여러 부의 복제도 포함),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 하에서 저작물을 복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 법의 추가 조항에서는 교육과 도서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회가 특별히 허락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의 균형을 보존, 존속시키는 것은 전통적인 형태에서 뿐만 아니라 전자적인 환경에 있어서도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공익에 기여하는 정보 인프라스트럭처(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발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일이다.

새로운 기술의 혜택은 저작권 소유자와 공중이 함께 향유해야 한다.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은 정보들을 오로지 전자 형태로만 이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공중의 합법적 권리는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저작권이 진정으로 그 목적인 "발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중의 공정 이용 권리는 전자 시대에도 존속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은 개개인의 비용 부담이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

저작권의 침해 없이 공중에게 부여되어야 할 권리 :

-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현장 또는 원격지에서 읽고 듣고 볼 수 있어야 한다.
- 공표된 저작물을 통하여 정보를 탐색(browsing)할 수 있어야 한다.
- 원작의 독창성을 유지하는 반면 공정 이용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변형하는 시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공표된 저작물 또는 도서관의 장서 가운데 어떤 저작물의 기사 한 편 또는 다른 일부분을 학습,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그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단 한 번 복제할 수 있어야 한다.
-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복제한 것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또 그것을 일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작권의 침해 없이 비영리 도서관 및 기타 108조에서 정한 도서관이 그 이용자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권리 :

-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저작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전자 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자적인 지정도서실(Reserve Room) 서비스의 일환으로 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저작권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唤起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예기치 않은 행위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도서관은 면책되어야 한다.

이용자, 도서관, 교육기관에 부여되어야 할 권리 :

- 이용 허락의 조건으로써 공정 이용이나 그 밖의 합법적인 도서관 또는 교육 목적의 사용이 제한 받아서는 안된다.
- 미국 정부의 간행물과 공동 자료는 발행 원가를 넘지 않는 실비로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비영리 교육을 위한 이용 권리는 대면 수업뿐 아니라 미래의 교육 기관이 그 학생들에게 전송 또는 방송을 통해 교육하는 원격 교육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주의깊게 구축된 저작권 가이드라인과 관행은 인쇄 매체 환경에서 이용자의 권리와 저작자, 출판자,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출현했다.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이해는 급변하는 전자 환경에서 이러한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성명서는 인쇄환경 및 전자환경 모두에 관련하여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을 언급하고 있다.

1995년 1월 18일

〈성명서 작성에 참여한 기관 : 미국법률도서관협회, 미국도서관협회, 미국대학보건학도서관장협의회, 미국연구도서관협회, 미국의학도서관협회, 미국전문도서관협회〉